

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

2024. 9. .

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: 2024년 6월 27일, 정부 제출

나. 회부일자: 2024년 6월 28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:

제417회 국회(임시회) 제7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(2024. 8. 26.)

상정/제안설명/검토보고/대체토론/소위원회부

제418회 국회(정기회)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(2024. 9. 3.)

상정/축조심사/의결(원안가결)

제418회 국회(정기회)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(2024. 9. 9.)

상정/제안설명/대체토론/소위심사보고/찬반토론/의결(원안
가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 정부)

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시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 현황 및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검사 현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‘보고’하도록 하던 것을, 앞으로는 관련 자료를 ‘제출’하도록 하려는 것임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수석전문위원 김건오)

- 지방자치단체의 권한행사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부처의 관여를 최소화하려는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임.

4. 대체토론의 요지

특이사항 없음.

5. 소위원회 심사내용

(소위원장 김현위원)

원안의결함.

6. 심사결과

원안의결

7. 법제사법위원회 체계·자구심사 내용

체계·자구심사과정을 거쳤음.

※ 심사보고서 붙임서류

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2조의2의 제목 “(공사업 현황 등의 보고)”를 “(공사업 현황 등의 제출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지도·감독의 결과에 대한 보고를”을 “지도·감독 결과의 제출을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“보고”를 각각 “제출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7조제1항제22호 중 “보고”를 “제출”로 한다.

②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0조제1항제19호 중 “보고”를 “제출”로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2조의2(공사업 현황 등의 <u>보고</u>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·도지사에게 제63조에 따른 <u>지도·감독의 결과에 대한 보고</u> 를 요구할 수 있다.	제72조의2(공사업 현황 등의 <u>제출</u>) ① ----- ----- -- <u>지도·감독 결과의 제출</u> 을 -----.
② 시·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 현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<u>보고</u> 하여야 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<u>제출</u> -----.
③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6조에 따른 사용전검사의 현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<u>보고</u> 하여야 한다.	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 <u>제출</u> -----.